

2025년도
대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대~흥 소~흥

2025. **대조동** 주민자치회 이야기



대조동주민자치회

목 차

■ 인사말 (회장님)	03
■ 1. 대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4
■ 2.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5
■ 3.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06
■ 4.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및 회계	07
■ 5. 2025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결과보고	15
■ 6. 제5회 대조동 주민총회 결과	17
■ 7. 2025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활동 사진	19
■ 8. 2025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활동 이야기	28
■ 9. 대조동 주민자치위원 소감	29
■ [참고]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30

[인사말]



언제나 활기찬 대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이맹수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2일 취임 이래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후원과 동참으로 2025년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자치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도움과 주민센터 직원분들의 크나큰 도움으로
아나바다장터를 비롯한 여러가지 동 참여예산 사업을 무난히 완료하였고,
불우이웃돕기 행사 · 짜장 나눔 행사 · 스와니 팝스 오케스트라 · 지역교회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단체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에는 대조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의 호응 속에 힘찬 출발을 기대해 봅니다.
대추마을 여러 주민 여러분 '대~통소~통'이라는 대조동 주민자치회 힘찬
구호처럼,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 12월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이맹수

1. 대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회 장 이맹수

부회장 박중환

회계감사 : 채정숙
사업감사 : 박두수

고문 기노만
박세은

사무국장 양미영

간사 최미경

분과명	환경개선 자원순환분과	자치회관 홍보교육분과	건강복지분과
분과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집 탄소중립, 친환경제품 만들기 - 지구야 힘내, 내가 더 노력해볼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조동에 찾아온 소중한 천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 - 대조동 다독다독 문학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계단 - 대추차 향기 가득한 정다운 대조동 - 우리같이 요리조리
분과장	이명숙	홍성국	채종채
분과총무	정성수	이종진	박주성
분과위원	강필숙, 곽순이 김연숙, 김현주 박두수, 박중환 소종호, 윤혜영 이미분, 이재순 임지연	고윤철, 김명선 김후남, 박재범 배미키, 원영숙 이경연, 이맹수 이미정, 이선희 이윤, 채정숙	박순옥, 박정자 박차열, 원종호 이봉호, 이성하 장수환, 장진숙 정영찬, 진성준 최정규

2. 데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자치력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해당동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주민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에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 40명

(2025. 12. 31.기준)

계	성 별(명)		연 령 별(명)		단체,개인 별(명)	
	남	여	40대 이하	40대 이상	단체	개인
40	19	21	1	39	12	28

■ 주민자치회 운영진 현황

(2025. 12. 31.기준)

회장	부회장	사업감사	회계감사	분과위원장	분과총무
이맹수	박중환	박두수	채정숙	이명숙 홍성국 채종채	정성수 이종진 박주성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현황

(2025. 12. 31.기준)

분과명	분과위원장/분과총무	위원	주요업무
자치회관 홍보·교육	홍성국/ 이종진	고운철. 김명선 김후남. 박재범 배미키. 이경연 원영숙. 채정숙 이선희. 이 윤 이미정. 이맹수	주민자치회·자치회관 활성화 및 홍보, 마을의제 접수, 교육문화 등
환경개선· 자원순환	이명숙/ 정성수	강필숙. 김현주 박두수. 박중환 소종호. 이미분 임지연. 이재순. 윤혜영. 곽순이 김연숙.	기후, 탄소중립 실천 및 안전교육. 마을환경 개선 등
건강·복지	채종채/ 박주성	박순옥. 박정자 박차열. 원종호 이봉호. 이상하 장수환. 장진숙 정영찬. 진성준 최정규	건강증진, 생활체육, 취약계층·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3.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자치 계획실행)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5. 1.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	- 2025년 1월1일 : 제3기 주민자치회 구성 - 임원선정 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정 - 분과 : 분과 실행사업 논의
2025. 2.	마을의제 발굴 및 사업실행	- 분과구성 : 분과 실행사업 논의 및 마을의제 발굴
2025. 3.~5.	2026년 마을의제 발굴 및 주민공론장 운영, 분과 사업 진행	- 마을의제 홍보 및 발굴 (23건) - 복지분과 : 활동 (업체 선정 및 홍보 등) - 다독다독문학마을 독서 문화 프로그램
2025. 6.	발굴 사업 부서검토 및 결과 공유	- 동 지역사업 실행 - 부서검토 결과 공유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2025. 7.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분과 사업 진행, 1동1대학 사업 진행	- 사전투표 실시 및 홍보 - 건강복지분과 : 우리같이 요리조리 프로그램 - 1동 1대학 : N잡러/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2025. 8.	분과 사업 진행, 주민총회 사전투표 실시	- 지구야 힘내! 내가 더 노력할게/아나바다장터 개최 - 주민총회 사전투표 개시
2025. 9.	2026년 마을의제 선정	- 제5회 주민총회 개최(2025. 9. 13.) - 2026. 동 지역사업 선정
2025. 10.	분과 사업 진행	- 건강복지분과 : 대추차 향기 가득한 대조동 - 자치회관분과 : 대조동에 찾아온 소중한 천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출생신고자에게 제공) - 1동 1대학 : N잡러/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2025. 11.	분과 사업 진행	- 환경.자원순환분과 : 우리집 탄소중립.친환경제품만들기 - 대조 아나바다 장터 개최(백석교회) - 건강복지분과 : 건강계단/대추차 향기 가득한 정다운 대조동 완료 - 기타 : 설문조사 및 워크숍. 참여구정팀 모니터링 실시
2025. 12.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 송년회(2025.12.16.) - 각 분과사업 마무리

4.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및 회계

■ 감사 개요

- 근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 감사일시 : 2025. 2. 28.
- 감사장소 : 대조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 회의실
- 감사사 : 박두수, 채정숙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종류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회 운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여부 2) 자치회의 안정과 분과모임의 활성화 여부 3) 주민요구에 맞는 의제사업 발굴 및 사업진행 여부 ※ 회의록 및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 회의록 점검 2. 회계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4년 상반기 사업 예산집행 결과 2) 집행기준 준수와 증빙 자료 ※ 사업별 지출결의서 및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주민자치회 공통서류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정기회의의 안건지 및 회의록 3. 운영진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 4. 분과위원회 안건지 및 회의록 5. 주민관협력 안건지 및 회의록 6. 지출결의서 7. 총계정원장 8. 비품대장 9.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10. 사무국장, 간사 활동 일지 11. 직원사용 일지 12. 주민총회 관련 문서 13. 수발신 문서 14. 업무인수인계서 15. 직인 보관관리 16. 법령 문서철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 양호 (해당 감사 내용 침삭 등 감사 의견 제시)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 양호 (일부 미첨부 서류 보충 바람)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 양호 (일부 미첨부 서류에 대한 사유 및 미비서류 첨부, 보충 바람)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진회의 15회와 정기회의 12회 및 사업 모임이 진행되었고, 정기회의 참석율은 99%이고, 2023년 주민총회에 상정된 실행의제가 84%이상의 집행율을 보였음. - 주민참여예산 1억원 중 7개의 사업 (총 91,769천원) 집행됨을 확인했음. 각 사업에 맞게 서류가 정리되었음을 확인함.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변화에도 모든 사업과 활동을 잘 마무리 하였음을 확인함.

붙임 :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 내용 1부.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제출인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 감사 (박두수)

회계 감사 (채정숙)

은 평 구 청 장 귀 중

■ 감사 내용

[별첨 1]

2024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내용

□ 감사 개요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제2장 제 14조(감사의의무),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제32조(재정), 제33조(회계 및 지출), 제34조(결산보고), 제35조(회계연도), 부칙 제4조(회비)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함」

- 감사일시 : 2025.2.19.(수) 10시
- 감사장소 : 대조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실
- 감사명칭 : 2024년 (1~12월) 대조동 주민자치회 자체 감사
- 감사자 : 박두수, 채정숙
- 참석자 : 오희현 사무국장, 이맹순 간사
- 업무협조 : 담당 행정주무관

□ 감사 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실태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월1회, 두번째주 화)	- 12회 361명 참석(평균 30여명 참석) - 참석자 명부 확인 - 회의 진행 안건지 및 회의록 확인
2	운영진회의 (월1회, 첫번째주 화)	- 15회 125명 참석(평균 8여명 참석) - 참석자 명부 확인 - 회의 진행 안건지 및 회의록 확인
3	민관협력회의 (필요시 상시진행)	- 8회 58명 참석(평균 7여명 참석) - 참석자 명부 확인 - 회의 진행 안건지 및 회의록 확인
4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회의 (월1회, 첫 번째주 금)	- 6회 63명 참석(평균 10여명 참석) - 참석자 명부 확인 - 회의 진행 안건지 및 회의록 확인
5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사업 (월1회, 첫 번째주 월)	- 7회 71명 참석(평균 10여명 참석) - 참석자 명부 확인 - 회의 진행 안건지 및 회의록 확인
6	건강복지분과회의 (월1회, 첫 번째주 화)	- 12회 112명 참석(평균 9여명 참석) - 참석자 명부 확인 - 회의 진행 안건지 및 회의록 확인

2.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현황 점검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운영비 (425만원 집행 내역)	- 운영비 99.98% 집행 완료 - 지출결의 및 증빙서류 확인 - 잔액 및 이자 반납 완료
2	의제 개발비 (1,235만원 집행 내역)	- 운영비 99.99% 집행 완료 - 지출결의 및 증빙서류 확인 - 잔액 및 이자 반납 완료 - 2024년 주민공론장(2회) - 2025년 의제 발굴 마을돌리보기(6회), 워크숍 (1회), 마을의제발굴(30건) 중 8건 선정
3	역량강화 워크숍 & 교육	- 역량강화 워크숍 1회 (고양시 일원) - 교육 11월 '소통하는 우리'
4	주민 총회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운영(5회) - 주민총회 투표 결과 724표(투표율 3.2%) - 성과공유회
5	대조 삼삼오오대학	-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협약 - 사업비 96.5% 집행. 잔액 반환(집행시 잔액) - 대학 프로그램 및 주민제안 공모 프로그램 운영 (453명 참여)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사업으로 만족도 높았음
6	자치회관흥교육분과 사업	사업1.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집 - 사업비 64.3% 집행. 잔액 반환(사업 내용 변경) -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잘 협업하여 운영함 - 관내 3가구 지원.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48명 참여 -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내용 공유 사업2. 대조어린이공원 조명시설 개선(공원 녹지과 추진)
7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사업	사업1. 대조동 주민 함께 놀아요. 민속놀이 한마당 - 사업비 98.4% 집행. 잔액반환(집행시 잔액) -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잘 협업하여 운영함. -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내용 공유 사업2. 두근두근 내 감성에 물주기 - 사업비 92.3% 집행. 잔액 반환 -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잘 협업하여 운영함. - 기관들과 연계하여 진행(7기관, 470명 참여) -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내용 공유

2.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현황 점검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운영비 (425만원 집행 내역)	- 운영비 99.98% 집행 완료 - 지출결의 및 증빙서류 확인 - 잔액 및 이자 반납 완료
2	의제 개발비 (1,235만원 집행 내역)	- 운영비 99.99% 집행 완료 - 지출결의 및 증빙서류 확인 - 잔액 및 이자 반납 완료 - 2024년 주민공론장(2회) - 2025년 의제 발굴 마을돌리보기(6회), 워크숍 (1회), 마을의제발굴(30건) 중 8건 선정
3	역량강화 워크숍 & 교육	- 역량강화 워크숍 1회 (고양시 일원) - 교육 11월 '소통하는 우리'
4	주민 총회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운영(5회) - 주민총회 투표 결과 724표(투표율 3.2%) - 성과공유회
5	대조 삼삼오오대학	-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협약 - 사업비 96.5% 집행. 잔액 반환(집행시 잔액) - 대학 프로그램 및 주민제안 공모 프로그램 운영 (453명 참여)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사업으로 만족도 높았음
6	자치회관흥교육분과 사업	사업1.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집 - 사업비 64.3% 집행. 잔액 반환(사업 내용 변경) -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잘 협업하여 운영함 - 관내 3가구 지원.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48명 참여 -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내용 공유 사업2. 대조어린이공원 조명시설 개선(공원 녹지과 추진)
7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사업	사업1. 대조동 주민 함께 놀아요. 민속놀이 한마당 - 사업비 98.4% 집행. 잔액반환(집행시 잔액) -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잘 협업하여 운영함. -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내용 공유 사업2. 두근두근 내 감성에 물주기 - 사업비 92.3% 집행. 잔액 반환 -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잘 협업하여 운영함. - 기관들과 연계하여 진행(7기관, 470명 참여) -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내용 공유

8	건강복지분과 사업	<p>사업1. 만보걷기챌린지_함께 걷자 대조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86.3%집행. 잔액 반환(집행시 잔액) - 주민자치회와 행정의 잘 협업하여 운영함 -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128명 참여) -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내용 공유 <p>사업2. 대조아나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87.5%집행. 잔액 반환(집행시 잔액) - 주민자치회와 행정 및 지역단체와 연계 운영함. - 총 5회 진행 (1,850명 참여), 10개 기관 연계 -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 내용 공유
---	-----------	--

3. 주민자치회 서류 확인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업계획서(상반기), 결과보고서(하반기) - 1월 자치사업팀 제출한 계획서 문서철 확인	확인
2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 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전용 통장 등 확인	확인
3	주민자치회 명의 통장 관리 확인 - 주민자치회 회비관리, 자치회관, 기타 사용 목적의 통장 등 확인	확인
4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증빙서류 확인	확인
5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총계정원장 등 확인	미비서류 보완
6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 보험증권 확인	확인
7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 2023년 은평구 주민자치회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책자기준	확인
8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 인건비 홈텍스, 위택스 사용 세금 지출건 확인	확인
9	근무시간에 따른 사무국장 활동비, 간사활동비 지급 여부 - 회장, 담당주무관 확인 문서철 / 세금신고 유무 적정성 확인	확인
10	주민자치회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확인
11	직인의 보관관리(주민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1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회의시 명부 확인	확인
13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지출 환불 등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세금신고 적정성 등 확인	확인
14	각 종 회의록 안건지, 회의결과보고서, 명부 등 문서철 확인 - 정기회의, 운영진회의, 분과회의, 사무국 회의, 주민총회준비위 회의 등	확인
15	주민자치회 관련 서류 보관 및 보관 장소 확인 - 주민자치회에서 제작된 각종 책자, 홍보지, 투표용지 등 자료보관 확인	확인
16	법 령 (조례, 운영세칙 문서철)	확인
17	주민총회관련 서류	확인
18	수발신 문서철(공문) / 내부결재문서 등 확인	확인
19	연 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 여부 관련서류보관	조사표 부착보완
20	업무 인수인계서	요청

4. 감사 총평

▶ 사업감사 의견

2024년 주민자치회는 총 35명의 주민자치 위원과 3명의 분과원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여 년 말 기준 8명의 위원이 사퇴, 27명의 위원과 3명의 분과원이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 <건강·복지분과> 3개의 분과로 운영되었습니다. 의제 발굴 사업으로 3개의 분과에서 적절하게 분담하여 총 7건이 진행되었으며, 기타 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은 사무국이 전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힘든 시기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새롭게 꾸려진 사무국이 빠르게 자리 잡아 운영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해였습니다. 의제 사업도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분과별 의제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환경개선·자원순환분과>에서 진행한 '대조동 민속놀이 한마당' 사업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와, 골목놀이 체험을 진행하면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여 즐겁게 보냈습니다. '두근두근~내 감성에 물주기' 사업은 대조동에 있는 관내 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웃음 치료와 반려 식물 키우기 사업을 진행. 주민과 소통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곳에서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여 지역의 좋은 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자치회관·홍보·교육분과>에서 진행한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집'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마을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와 함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조어린이공원조명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는 공원 녹지과와 추진하여 주민들이 놀이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건강·복지분과>는 '만보걷기 챌린지, 함께 걷자 대조야' 사업으로 올바른 걷기 방법을 배우고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운동하면서 소통의 장이 되었고, '대조아나바다'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여 총 5회 진행하면서 아나바다 활동뿐 아니라 먹거리, 체험활동까지 풍성하게 진행되어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몸으로 실천하고, 직접 참여하는 장이 열리면서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한 '대조삼삼오오대학'은 2023년 준비 단계를 거쳐 2024년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하고, 마을에서 문학 콘서트를 기획하여 음악과 시가 흐르는 힐링의 시간으로 새로운 마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도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주민총회'는 대조동 축제 '대추마을한마음축제'와 함께 진행되면서 야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마을 축제가 다시 시작하면서 대조동 곳곳에서 활동하는 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2025년 진행될 8개의 의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계단을 이용한 즐거운 걷기 '건강 계단', 1인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한 '우리 같이 요리조리', 출산을 함께 축하하는 '대조동에 찾아온 소중한 천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 독거어르신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대추차 향기 가득한 정다운 대조동'이 선정되었고, 노후 시설 개선 사업으로 '장미공원 시설 개선'이 선정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지구야 힘내, 내가 더 많이 노력해 볼게', '우리집 탄소 중립, 친환경 제품 만들기'가 진행 예정이며, 동 특화 사업으로 다독다독북카페 활성화 및 문학마을 브랜드화를 위해 '대조동 다독다독 문학마을'이 선정되어 알차고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다양한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회계감사 의견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의제 개발비, 주민자치회 회비 운영 등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회계 관련 증빙서류 등 확인하였으며, 사무국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약간의 혼선이 생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수정, 보완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의제 사업의 경우 대조동주민자치회에서 사업 진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예산집행은 대조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하므로 서로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업추진은 잘 진행되었지만,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결과 보고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2026년 사업 진행 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2024년은 다른 해에 비해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지만 주민자치 회장님과 사무국, 행정이 잘 맞춰가며 선정되었던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위원 한 사람 한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회장님 이하 사무국과 행정이 서로 협업하여 운영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3기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합류하신 주민자치위원들과 더 발전된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 진행 사진 첨부



5. 2025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실행사업 결과보고

■ 2025년 주민자치회 예산 보고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총 계 [①+②]	자치구 보조금①			자부담 ②
	소 계	사업운영비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12,850	12,850	3,850	9,000	0

□ 세출예산

○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 추진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3,825
소 계			3,825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구입 (2월~11월) - 60천원×10개월=600천원	600
	공공운영비	○ 인터넷 및 통신요금 - 60천원×12개월=720천원 ○ 정수기 대여료 - 27,500원×12개월=330천원 ○ 프린터 수리비(비품 교체) - 300천원×1회=300천원	1,350
주민자치회 사업·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 홍보비(위원 추가모집 홍보) - 현수막 115천원×1장=115천원 - 리플릿 380원×500매=190천원	305
분과 구성 및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 분과 운영 식다과비 - 9천원×3개분과×15명×2회 =810천원 ○ 운영진 식다과비 - 9천원×10명×2회=180천원 ○ 사무국 회의 및 민관협력회의 식다과비 - 9천원×10명×1회=90천원 - 4천원×10명×1회=40천원	1,120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행사운영비	○ 강사료 150천원×1명×3회=450천원	450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금액	비율		
구비 보조금	12,825,000	9,522,550	74.25	3,302,450	7,632

(2) 구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비목	실제 집행내역		집 행 액	반납액 (잔액)
			세부내역	예 산 액		
합계	12,825천원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비	민간경상 보조금 3,825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54,900	654,900	100,340
			공공운영비	1,315,760	1,315,760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	755,000	755,000	
			식다과비	999,000	999,000	
		이자액	발생이자	1,934	1,934	
주민자치회 의제개발비	민간경상 보조금 9,000천원	일반운영비	홍보비			3,202,110
			교육비			
			행사운영비	4,544,500	4,544,500	
		행사실비지원금	식다과비	1,253,390	1,253,390	
			운영비			
		이자액	발생이자	5,698	5,698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세부사업	예 산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12,825,000	-	12,825,000	9,522,550	3,302,450	
운 영 사업비	3,825,000	운영비	2,825,000	2,725,660	99,340	지출 후 잔액
		행사실비지원금	1,000,000	999,000	1,000	
의 제 개발비	9,000,000	운영비	6,320,000	4,544,500	1,775,500	
		행사실비지원금	2,680,000	1,253,390	1,426,610	

6. 제5회 대조동 주민총회 결과

대조동 참여예산 주민총회 의결서

대조동 주민총회 결과, 2026년도 예산편성 관련하여 선정된 최종 주민 제안 사업은 다음과 같음.

[참여예산 등 지역사업 요약]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 부서(동)	사업비	필요성	제안자
프로그램	건강한 일상속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인지장애 예방	대조동	8,350	필요	이맹수
	이것저것 따지는 시니어“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금융교육”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보이스피싱 유형·대응법 및 금융 실습 교육 실시	대조동	4,660	필요	박재범
	대조 창작 교실	캘리그래피·공예·그림 등의 프로그램 진행 후 작품 전시·나눔 행사 진행	대조동	4,960	필요	이맹수
시설	팜스퀘어 소공원 노후시설 교체	소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운동기구 도색	공원 녹지과	30,000	필요	석혜정
환경	환경은 해충 방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해충 예방 교육 및 방역 서비스 제공	대조동	6,470	필요	원종호
	대조동 주민을 위한 플리마켓	재활용 나눔장터와 업사이클링 체험교육으로 주민 참여형 친환경축제 개최	대조동	5,370	필요	김현주
동특화	대조동 색소폰 음악축제 (봄과 가을의 선율)	봄·가을 2회 색소폰 오케스트라 공연 및 무대·음향·천막 설치 지원	대조동	10,100	필요	정영찬

2025년 제5회 대조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6년 자치계획 상정 의제에 대한 제5회 대조동 주민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5. 9. 13.(토) 11:00
- 장 소 : 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 운영방식 : 대면 방식
- 투표방법 : 사전투표, 주민총회 현장 투표
- 투표기간
 - 사전투표 : 2025. 8. 14.(목) ~ 9. 8.(월)
 - 총회 현장투표 : 2025. 9. 13.(토) 10:30~11:00
- 대 상 : 대조동 주민(투표권 : 13세 이상 주민, 생활주민)
- 투표인원 : 1,434명(사전 1,383표 / 현장 36표 / 무효 15표)

2. 주민총회 투표 결과(2026년 의제 7건 승인)

구분	사 업 명	사전	현장	합계	순위
일반	건강한 일상속으로	888	26	914	2
일반	이것저것 따지는 시니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금융교육'	614	22	636	4
일반	대조 창작 교실	589	4	593	5
환경	환경은 해충 방제부터	1,072	26	1,098	1
환경	대조동 주민을 위한 플라마켓	890	24	914	2
동특화	대조동 색소폰 음악축제(봄과 가을의 선율)	1,108	33	1,141	찬성
시설	팜스퀘어 소공원 노후시설 교체(말각정)	1,208	23	1,231	찬성

※ 5위(대조 창작 교실)은 예산 조정(하향)하여 선정 승인

3. 주민총회 사진



이상과 같이 대조동 제5회 주민총회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민총회 결과에 대한 문의는 대조동 주민자치회(02-305-02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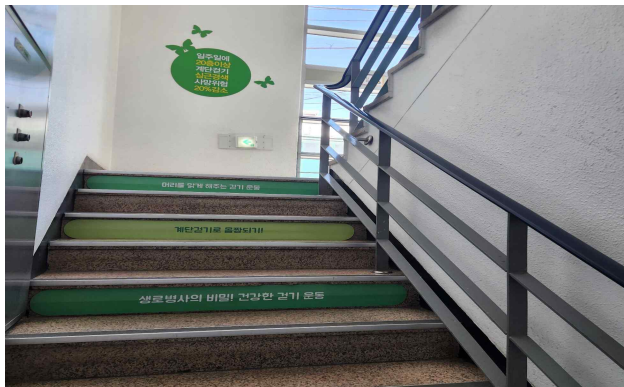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7. 2025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활동 사진

[2025. 동 지역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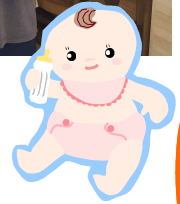
□ 대조동 건강계단



□ 우리 같이 요리 조리



□ 대조동에 찾아온 소중한 천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



□ 대추차 향기 가득한 정다운 대조동



□ 지구야 힘내, 내가 더 많이 노력해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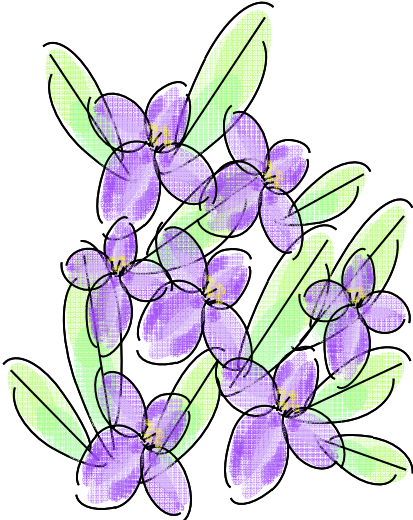
□ 대조동 다독다독 문학마을



□ **우리집 탄소중립 친환경제품 만들기**



□ **은평 1동-1대학(N잡러 E-commerce / 이미지메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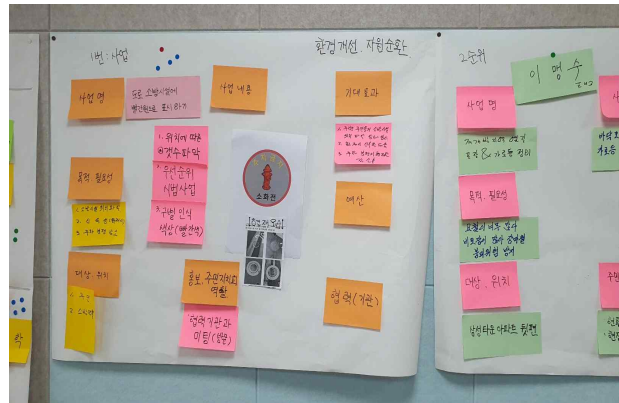


2025. 주민자치회 이모저모

□ 제5회 주민총회



□ 주민공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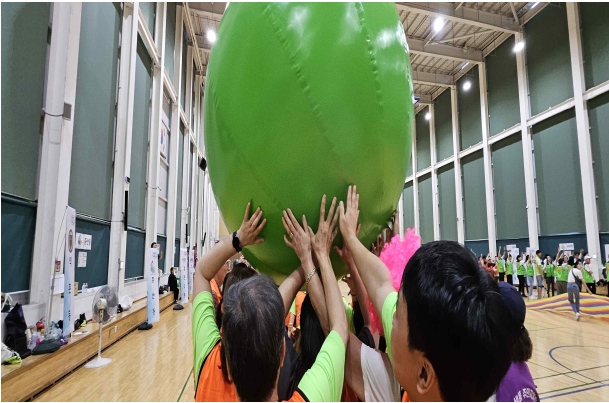
□ 사전투표 및 구 주민총회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 연합워크숍



□ 자매결연지(안동) 방문



□ 역량강화 워크숍



□ 성과공유회



8. 2025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활동 이야기

○ 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진 아나바다 나눔장터 개최

- 목적 : 재활용품 나눔 발판삼아, 주민의 마음 & 사랑 함께 나눔
- 성과 : 스와니팝스 오케스트라 & 사랑의 짜장면, 다독다독 문학마을 행사 지역교회연합회와 합동 이웃돕기 나눔 장터 운영 등 [총 3회]

○ 대조동에 찾아온 소중한 천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 배부

- 목적 : 주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연대감 증진
- 성과 : 100개 제작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70명의 출생아에게 배부하였으며 남은 선물은 내년 이월되어 지속 배부 예정

○ 우리같이 요리조리 사업

- 목적 : 1인가구,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참여자의 건강과 성취감 유도
- 성과 : 3회차에 걸쳐 취약계층의 영양을 고려한 사업으로 참여자들과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건강계단 사업

- 목적 : 계단 오르기 통한 건강 증진 홍보.교육
- 성과 : 대조노인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 계단에 계단 사용 문구 부착과 계단걷기 교육 실시

○ 우리집 탄소중립, 친환경제품 만들기

- 목적 :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배우고 환경 개선 홍보
- 성과 : 초등학생 대상으로 '양말목공예' 진행. 성인대상 '탄소저장고 목공 및 접이상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사업 고도화 가능성 높음

○ 분과사업 등은 주민이 스스로 운영 및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역량이 향상됨

-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아나바다 장터 운영(총 3회) 민·관협력사업
- 뜨거운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킬 계획임

○ 대조노인 어르신대상 건강프로그램과 탄소중립 목재, 폐자원활용 생활소품 만들기

- 남녀노소 건강한 소통으로 교류 증진

○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아나바다장터 운영(총 3회)

- 주민자치회와 (동)행정과의 민·관협력 사업이 잘 이루어진 사업으로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킬 계획임

9. 대조동 주민자치위원 소감문

긍정적인 평가

-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주민 참여가 좋았음
- 준비 과정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주민총회 및 사업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잘 이루어짐
- 일부 사업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 의견
- 위원 간 협력과 역할 수행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음

아쉬운 점/ 개선 필요사항

- 홍보 방식 다양화 및 사전 안내 강화
-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 개선
- 역할 분담 명확화 및 사전 교육 강화
-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주민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한 실질적 사업 기획 필요

제안 사항

- 홍보 방식 다양화 및 사전 안내 강화
-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 개선
- 역할 분담 명확화 및 사전 교육 강화
-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주민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한 실질적 사업 기획 필요

종합 의견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홍보·준비·참여 확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주민 참여 기반을 더욱 넓히고 체계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세칙

2021.1.22.~2.2		내규 수립 의견수렴
2021.2.3		내규 수립 워크숍
2021.2.8	1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1차 회의
2021.2.16	2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21.3.9	제정	1차 정기회
2021.5.4	개정	3차 정기회
2022.3.15	개정	2022.3.정기회의(위원 회비)
2022.4.12	전면개정	2022.4. 정기회의
2023.05.02.	전면개정	2023.5. 정기회의
2024.04.12.	전면개정	2024. 정기회의
2025.11.06.	1차 안: 운영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 준비위원회 1차 회의
2025.11.10.	2차 안: 운영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 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25.11.10.	전면개정	3차 정기회의 의결

대 조 동 주 민 자 치 회 

은평구 주민자치회 표준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대조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 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대조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 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지역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실행, 성과공유의 과정까지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사무국장·간사·분과위원장(또는 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대조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대조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조동 주민자치회” (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대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종교적·사적 이용 목적 배제
7. 지역사회 봉사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행정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시에 한한다.)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하되,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 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 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임원과 위원인 사무국장, 간사를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분과 활동에 연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고성·욕설 사용 등으로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8. 특정 위원을 사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라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되,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한다.
-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간사와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사무국장의 임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1.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2. 분과별 위원장(또는 총무) 각 1명

제11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③ 사무국장·간사는 세칙 제19조, 제20조를 따른다.

제12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출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부회장·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투표방식 등의 일반적인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임무) ①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정기 및 수시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사업추진 내역

2. 주민자치회 수입, 예산 지출 내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동내역 전반

③ 제2항 2호에 따른 예산 지출 내역의 대상은 주민자치회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과 수익금·찬조금 집행 등에 한하며, 동 주민센터 일상경비 교부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시감사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 시작 30일 전에 자치회장에게 감사 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세칙 제23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1회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진회의 또는 정기회의에 연 3회 불참할 경우(단,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범하였을 때
4.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 또는 주민자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5. 주민자치회 운영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해 또는 임무 태만 등의 민원발생으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임) ① 임원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임한 사람은 사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7조(결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등 결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결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 한다.
 2.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 결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단, 후보등록 공고에 3회 이상 지원자가 없을시에, 회장의 경우는 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부회장의 경우는 공석으로 둘 수 있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결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 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 ② 결위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결위로 인해 후임자로 선출된 경우도 이와 같다.
- ④ 회장과 부회장 모두 결위시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업무 대행 수행자를 결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⑥ 간사·자원봉사자 등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 채용 및 근로·배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구 채용방침 등을 따른다.

③ 사무국장은 근무상황부 및 시간외근무상황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 및 운영진과 협의하여 대조동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 처리하며, 업무상황을 종합하여 상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사무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위될 경우, 모집 당시 예비자가 있으면 예비자 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라 후임을 채용하고 잔여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무국장직을 수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할 수 있으며,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선발할 경우에는 은평구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사무를 보조하며, 위원 관리, 각종 사업 및 행사 실행 보조, 자료 정리 및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간사는 활동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해임 등의 사유로 결위시에 자치회장은 간사를 새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남은 활동기간 동안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7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분과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과 사무국장·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분과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한다.
- ⑤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분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을 선출한다.
-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의장이 되며, 분과의 각종 활동 및 분과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부위원장또는 분과총무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 작성, 사업계획수립 등 분과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⑧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가입시 가입신청서를, 탈퇴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회의, 사업 활동 등에 연 5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⑨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 ⑩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사업 실행뿐만 아니라 대조동 전체 주민자치사업을 함께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⑪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실행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운영회의
3. 민관협력회의

4. 분과회의

5. 주민총회

-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또는 간사)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하며, 정기·임시회의의 주요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 3. 주민총회 개최 및 의제 확정 등 관련된 사항
 - 4. 주민자치회 사업·결산 및 감사 보고의 승인
 - 5.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해임
 -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7.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8.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9.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장 유고 시, 분과부위원장(분과총무)이 출석할 수 있다.
- ④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사무국장 등 주민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7조(주민공론장 및 성과공유회) ① 주민자치회는 의제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론장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자치회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③ 성과공유회는 매년 12월 정기회의와 함께 당해 년의 주민자치회 사업 정리 및 평가, 차년도 사업안내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제2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13세 이상의 주민(대조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1%(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홍보, 설명회, 사전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효율적인 주민총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⑥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 및 구성 인원, 업무분장, 역할, 운영기간 등을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운영한다.
- ⑦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⑨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⑩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⑪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 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회의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등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예산
 3.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4.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 ② 주민자치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료는 주민자치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3조(회계 및 지출) ① 제32조(재정)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산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제32조(재정)에 규정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이 사무국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사무국은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의 인계) ① 임원, 자치위원 및 간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및 해임, 사무국장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의 진행사항과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고 인수 인계서와 함께 후임자 또는 해당 업무 대행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추진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

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③ 인수인계 시점은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주민자치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직인)
3.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세칙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5.11.10)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 계좌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마을 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 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장학금 지급 등) 시 단체 경비로 지급한다.
2. 단합대회 및 워크숍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일부는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3. 애경사에는 근조기, 축하기 및 현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위원 2년 임기 중 1번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가족(부모,자녀)에 한함

4. 현금성 경비 (착불을 포함한 택배비, 쿡비, 택시비, 세탁비 등)

- ③ 신규 위원은 위촉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입 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경미한 지출 및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선결제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⑥ 위원 본인 상해 3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0,000원 지급한다. 단, 2년 임기 중 1회에 한함.
- ⑦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 후원, 자치위원에 대한 답례품 등]
- ⑧ 회비는 매월 보고하며 매년 12월 감사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 ⑨ 위원의 혜택은 연회비 및 회비 완료 회원에 한함. 단, 2개월 이상 납입 하지 않을 경우 위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대조동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서 실행까지
주민자치회가 함께 합니다.

2027년 제4기 대조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안내

마을의 문제를 논의, 결정, 실행, 개선하고 싶거나,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봉사활동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위원, 분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 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각종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발행인 :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이맹수

편집인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양미영